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0월 2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3년 11월 7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11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를 2자녀 이상으로 정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자녀 혜택 확대를 위한 요금 감면 기준 완화 (안 제35조)
 -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3명 이상에서 (개정)2명 이상으로 확대

- 다자녀 가구 감면대상을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된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로 수정하여 조건 완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3. 10. 23.
- 회부일자 : 2023. 11. 7.

2.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를 2자녀 이상으로 정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 혜택 확대를 위한 요금 감면 기준 완화 (안 제35조)
 -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3명 이상에서 (개정)2명 이상으로 확대
 - 다자녀 가구 감면대상을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된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로 수정하여 조건 완화

4. 검토내용

가. 관련 근거

- 「수도법」 제38조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는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는 규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지자체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도적 근거로 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여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이와 관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왔으며,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 중 다자녀가구 지원 관련 내용

- (추진방향) 아동의 삶의 질 제고와 가구특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생활·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여건 마련
 - 특히,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아동 1인당 보다 실질적이고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추진
 - (생활밀착형 제도 마련) 아동별 실질적으로 동등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지자체·기관 간 협의회를 운영,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

- ‘23년도에는 시행계획을 통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제도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제도에도 다자녀 기준 완화 추진을 집중 확대하려 하고 있음.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5조(요금 등의 감면)제1항제5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의 요금 감면 수혜를 확대하고자 함.

현행	개정
다자녀가구(「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함께 거주하는 <u>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u> 인 가구)인 경우	다자녀가구(「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u>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u>)인 경우

5. 종합검토의견

- 관내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자체 추진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므로 개정이 가능한 사안임.
- 다만, 수도요금 감면 확대는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당위성 및 재정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
----------	-----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를 2자녀 이상으로 기준한 내용을 반영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혜택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안 제35조)

-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 다자녀 가구 감면대상을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된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로 감면대상 조건 완화

개 정 전	개 정 후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u>주소와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u> 가구)인 경우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u>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u>)인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에 1억 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3. 09. 13. ~ 23. 10. 0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u>다자녀 가구</u>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u>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u>)인 경우</p> <p>6. ~ 11. (생략)</p> <p>② (생략)</p>	<p>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u>-----</p> <p>6.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1.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총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제1항제5호 다자녀 가구 감면 확대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다자녀 가구(2자녀) : 10㎡ 이내에서 감면(사용량 20㎡ 기준)
⇒ 1,200가구 * 8,800원 * 12개월 = 126,720천원
- 다자녀 가구(3자녀) : 15㎡ 이내에서 감면(사용량 25㎡ 기준)
⇒ 300가구 * 14,300원 * 12개월 = 51,480천원

나. 추계 결과

- (개정 전) 350,000천원 ⇒ (개정 후) 528,2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전입금(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연락처	(033) 330 - 236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701-02)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재원 조달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비(군비)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